제 5 회 청 소 년 사 회 참 여 발 표 대 회

햄버거 가공식품 분류 및 식품첨가물 표시제 적용

모둠명 | 가온누리 모둠원 | 박서정 박진아 최윤진 최지현 김지원 한소영 박수민 지도교사 | 권정혜(상일여고) 소속기관 | 상일여자고등학교

햄버거 가공식품 분류 및 식품첨가물 표시제 적용

- 가온누리

▮ 1.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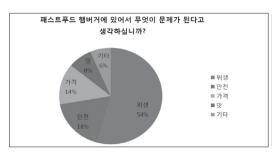
1-1. 문제인식

지난달, 한 채널A의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햄버거를 대상으 로 3개월간 부패실험을 진행했다. 놀랍게도 한 유명 프랜차이즈의 햄버거는 3개월간 패티에서 수분기가 빠져나갔을 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실험은 햄버거에 방부제를 비롯한 식품첨가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이 실험 결과에 관해 관련업체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만을 반복했다.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의 주 소비층은 청소년이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2012년 학교건강 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56.9%, 중학생 63.5%, 고등학생 67.7%가 주 1회 이상 핶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강동구의 초ㆍ 중 · 고등학교 주변에도 많은 패스트푸드점, 주로 유명 핵버거 프랜차이즈들이 자리하고 있어 학생들이 끼니 해결을 위해 이를 자주 찾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렇게 자주 섭취하는 햄 버거에 어떤 식품첩가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햄버거에는 열량, 단백질 등의 영양분은 표시되어 있지만, 현재 식품첨가물표시제는 가공식품에 한하여 시행되 므로 가공식품에 포함되지 않는 햄버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문제로 인식하 고 개선하고자 현 상황을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실 파악

현재 패스트푸드점의 핵버거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 중 핵버거의 성분표시 문제에 대해 학 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 5~6일에 걸쳐 상일여자고등학교 학 생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에 성분표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아니오

그림 1. 햄버거에 대한 인식

그림 2, 햄버거 성분표시에 대한 인식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 중 72%(위생 54% + 안전 18%)가 패스트 푸드점의 햄버거에 있어서 위생과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제시될 수 있 는 해결책인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가 식품첨가물을 비롯한 성분표시에 대해서 87%의 학생이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학생들은 패스트푸드점 햄버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분표시의 필요성 역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실태조사

햄버거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영 방송의 뉴스, TV 시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첨가물 덩어리인 햄버거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의 방송을 방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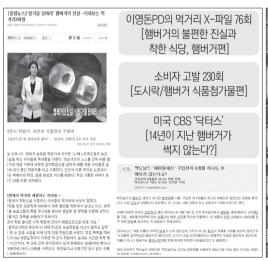




그림 3. 햄버거 관련 기사 및 보도 자료

그림 4. 학원가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

보도 자료의 빈도수는 물론, 내용을 봤을 때 패스트푸드에 대한 위험성은 늘 관심사이다. 학 교와 학원을 병행하느라 인스턴트 식품에 자주 의존해야 하는 청소년층을 노려 패스트푸드점

은 위의 사진에서 보다시피 학원가에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격과 먹는 데 드는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패스트푸드 중에서도 햄버거는 선호도 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청소년층이 햄버거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만큼 미치는 위험성 역시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강동구 명일동 및 고덕동을 조사한 결과, 롯데리아, 맥도널드, 버거킹, 도넛 가게 등이 학교 앞 또는 학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근접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원밀집 지역에 소재한 롯데리아, 맥도널드에서 평일 7시~9시까지 구매 고객을 조사한 결과, 200명의 고객 중 약 70%에 해당되는 140여 명이 청소년에 해당되었다. 또한 본교의 학교 행사마다 학생들의 간식으로 햄버거를 구매한 학급은 15개 학급 중 10개 학급으로 청소년들이 햄버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없이 쉽게, 많이 접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 2. 대안정책

햄버거의 성분표시는 햄버거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구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보가 될 것이다. 특히 햄버거를 다른 연령충보다 많이 접하는 청소년에게 성분표시는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분표시는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제품에만 표기될 수 있으므로 햄버거 역시 가공식품으로 분리되어야만 성분표시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과 식품표시제에 대한 정책 제시 및 분석을 통해 햄버거의 성분표시 타당성 및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1. 가공식품의 정의와 분류

2-1.1. 가공식품의 정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의 천연식품재료를 그대로 또는 첨가물을 가하여 먹기 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며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처리한 식품. (네이버 지식백과)

: 정의와는 다르게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식품은 보통 가공식품이라 정의하지 않는다. 천연상 태에서 모양이 바뀐 혹은 다른 재료들을 첨가한, 간편함과 저장성 면에서 향상된 형태의 식 품을 보통 가공식품이라 일컫는다.

2-1.2. 가공식품의 분류

1) 사용하는 원료에 따라 농산가공식품 · 축산가공식품 · 수산가공식품 등으로 구분

- 2)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건조식품·냉동식품·염장식품·발효식품·통조림식품·조림식품·중간수분식품·레토로트 파우치(retortable pouch)식품 등으로 분류
-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주식 · 부식 · 가식 · 기호식품 · 인스턴트식품 · 비상식량 등으로 구분
- 4) 식약청지침서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 첨가 유무, 가공처리 여부, 위해발생우려 여부 3가지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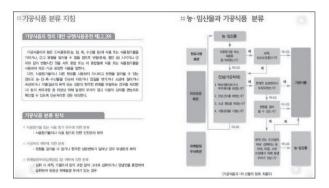


그림 5. 식약청 가공식품 분류지침

위의 정의와 분류 지침을 봤을 때 햄버거는 천연상태의 식품이 아닌 가공된 식품이며, 이를 이루고 있는 재료 또한 모두 가공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공식품의 정의에 따라햄버거를 가공식품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2-2. 식품완전표시제의 정의와 장 · 단점

2-2.1. 식품완전표시제

식품완전표시제란 식품 제조 및 가공 시 사용한 식품 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성분명과 원재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확한 명칭은 "식품 영양성분 표시의무 확대방안"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패스트푸드의 안전한 섭취에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제도임에 분명하다.

2-2.2. 식품완전표시제 장점

(1) 과거 표시기준의 허점 보완

과거 표시 기준은 식품 제조 시 많이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을 5가지 이상만 표시해도 문제가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규제하였을 때 소량이 사용되어 당장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첨가물은 대부분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식품완전표시제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식

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성분은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과거 정책과 차별화된 점을 보인다.

(2) 주요 식품첨가물 71품목에 대한 표시 의무화

식품첨가물 중에서도 합성 착색료 같이 위험성이 높아 그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식품첨가물들이 있다. 이러한 주요 식품첨가물 71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에 첨가된 함량과 관계없이 그 용도와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첨가물들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였다. 소비자들이 식품에 표기 된 성분 표시를 주의 깊게 보고 그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전보다 더욱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2.3. 식품완전 표시제 단점

(1) 복합 원재료 개념 도입

복합 원재료란 두 가지 이상의 원료나 첨가물이 섞여져 있는 재료를 말한다. 여기에 섞여 있는 첨가물은 소량의 경우라도 신체에 유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식품첨가물 표기란에 ○○양념이라고 표기 된 경우에는 복합 원재료가 사용되었지만 이에 첨가된 식품첨가물은 표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 속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있는 지 소비자는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첨가물의 용도명만 기재 가능

첨가물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어떤 식품첨가 물질을 착색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착색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해 주기만 하면 된다. 때문에 착색료로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3)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물질만 표시

식품 최종 검열시 남아 있는 물질만 표시하면 된다. 염산은 중간 과정에서 알칼리로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만약 식품 제조 과정에서 염산이 사용되었는데 알칼리로 중화한다면 염산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중간 과정에 사용된 첨가물을 소비자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3. 식생활교육지원

최근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는 기존의 학교 가정 수업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의 가정 수업에서는 식생활의 변화 및 선택의 중 요성에 대해 제시하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범위에 따라서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 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기, 아동기에 부모님의 지도와 제한을 받았던 식생활이 맞벌이 가정 증가, 교우 관계 및 학교 생활, 청소년기의 사교육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식품완전 표시제 또한 무의미해질 것이라 본다.

2-3.1.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의 정책을 보면 정부가 식품첨가물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2.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정책 분석

식생활 및 식생활 안전에 대한 관련 법률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법자(학제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 장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법자(학제는 학교에서의 식상 및 교육 발생하는 의용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 장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법자(학제는 학교에서의 식상활 교육 함께 함께 한다는 교육관계자, 등이업인, 식품 관련 동자자 돌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법자(학제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환경화를 위하여 환경신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작가래 속 건 등에 불요한 감네들 지원할 수 있다. 소개결 2013.61.30
1. 국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개결 2013.61.30
1. 국가원이 신생활안전화기를 병벌합, 제공조제호에 따른 아원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아원이와 철소년이 자주 선취하는 식품·식품철가물의 영양성문 및 유해성본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철가물
3. 그 밖에 올바는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울림속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와 지법자(학계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병원들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 장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법자(학계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병생활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 장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법자(학계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생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 장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법자(학계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생성화를 위하여 관심진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작가래 속인 등에 필요한 강비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

법률 1.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
제2조(정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세점 2010.5.25, 2013.23, 2013.7.30>
1. 대단이안 제3화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고대통치합니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료 말한다.
2. '마린이 기호식품'이라 <u>"식품위설법, 또는 "추산물위설관리법,</u>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아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u>대통점열으로 점하는</u> 식품을 말한다.
3. '박지안 <u>'소충문교육법, 제2조에</u> 때문 초충학교, 공학교, 교등학교 및 촉수학교를 말한다.
4. '마린이 식생물 안전지수'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인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달한 수치(이하 '식생물 안전지수'와 한다)를 말한다.
5. '고양발처명의 식품이란 식품역사용인건처원이 정한 기본보다 열명이 높고 영양가(未養物)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객할 우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6.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u>"식품위설법, 제10조</u>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한다.
[시험일: 2014.1.31] 제2조
```

법률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관련법에 대한 설명을 보면, '현행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조항을 개정하여 현재 단순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한 원칙을 더 강화하여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 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 · 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등을 교육 내용에 반드 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3. 정책 분석

사회의 변화 및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식생활 교육의 부재 문제를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어느 정도 해결해줄 것이라 여겨진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유해성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학교 앞 식품들의 무분별한 섭취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 자체에서도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공익 광고를 통해 바른 먹거리에 대해 홍보하며 식품의 첨가물 무첨가를 광고하고 있는 등 안전한 식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제도는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교육청 단위의 교육 도입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교육이 아닌 실제 식품을 대상으로 한 구매 과정에 대한 실천적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3. 공공정책

3-1. 햄버거 가공식품으로 분류

패스트푸드점에서 주 메뉴로 판매 중인 햄버거를 가공식품으로 분류함으로써 가공식품과 동 일한 법을 적용시키기로 한다.

3-1.1. 필요성

현재 패스트푸드인 햄버거는 조리식품에 속해 있다. 이 경우 식품 및 영양표시제도는 적용되지만 식품 표시 제도에서 기재해야 하는 표시사항들(제품명, 식품의 유형, 원재료 및 함량, 내용량, 유통기한, 보관 방법, 포장 재질, 주의사항)은 적용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햄버거에 재료 및 함량,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햄버거를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고 식품표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3-1.2. 햄버거가 가공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

(1) 식약청의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 첨가 유무에 의한 분류

가공식품의 정의에 대한 규정①과 같이 햄버거 고기패티는 원재료인 고기에 30여 개 이상의 식품 첨가물(구연산 나트륨, 초산, 안나토 색소, …)을 넣어 제조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정의 대한 규정(식품공전 제1.2.29)

가공식품이라 함은 ①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참기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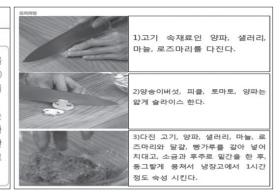


그림 6. 식약청의 가공식품 정의에 대한 규정 지침

그림 7. 햄버거 패티 제조과정

또한 햄버거 패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림5에서 알 수 있듯이 분쇄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분쇄 과정으로 인해 패티는 본래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다. 따라서 가공식품의 정의에 대한 규 정(2)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2) 위해발생우려(섭취방법 등) 여부에 의한 분류

햄버거에 들어가는 폴리 인산나트륨에 인 성분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신독성이 있어 신장이 나쁜 화자가 이것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뼈 성장장애가 올 수 있고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색소로는 염색체 이 상을 일으킬 수 있는 소리빈산 칼륨, 간이나 신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캐러멜 색소가 있다. 또 한 안식향산나트륨과 소르빈산칼륨은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밝 혀졌다. 위와 같이 햄버거에 들어가는 30여가지 식품첨가물의 위험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높으 므로 이 항목에 적합하다

(3) 가공처리 여부에 의한 분류

새우버거와 오징어버거의 경우 패티의 주 재 료가 각각 '새우', '오징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은 '명태연육'이 주 재료이다. '명태연육'은 탈피,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어육가공품 중 '어육살'로 가공식품에 해 당하다.

2. 가공처리 여부에 의한 분류

가공식품

- 기공공정을 거친 경우 8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가공
- 발미,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된 것은 식품공전상 제 5, 12, 어육가공품 중 '어육살'로서 가공식품
- 다만, 세척, 가열조리 없이 곧바로 섭취하거나, 바로 양념만 혼합 하여 섭취하는 회, 회감용 등 제품은 식품공전 제 6. 수산물에 대한 규격 중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 의 기준규격 적용
- ※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필렛
- * 단당을 들어들 수 내다 글것 횟감용: 식품공전 제 6. 수산물에 대한 규격 중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 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 기준규격 적용 *조리, 가공원료: 식품공전 상 '어육살'로 가공식품
- 가열살균 등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가공

그림 8. 식약청의 가공처리 여부에 의한 분류 지침

(4) 모호한 조리식품, 가공식품의 분류

조리식품의 사전적 정의는 '본 조리 과정을 거의 끝내고 재가열의 간단한 처리 또는 그대로 식탁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제된 가공식품의 총칭'이다. 광의의 조리식품에는 "간편 식품", "즉석 식품", "조리냉동식품", "통·병조림", "반조리 식품", "전자레인지식품", "반찬", "fast food", "도시락" 등 광범위한 식품이 포함된다.

가공식품 내용에는 통조림 · 병조림, 냉동가공식품



그림 9. 조리식품과 가공식품과의 포함관계

(조리 또는 반조리 식품을 냉동한 것),레토르트 가공식품(카레·스파게티소스·해시드 소스등), 인스턴트식품(라면, 햄버거용 고기, 튀김용 새우 등)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항목은 조리식품과 겹치는 내용이다. 더 애매한 것은 '가공과 조리는 그 방법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공장에서 하면 가공, 가정에서 하면 조리'라고 구분 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햄버거는 조리식품에도 해당되지만 냉동가공식품(조리 또는 반조리 식품을 냉동한 것), 인스턴트식품(라면, 햄버거용 고기, 튀김용 새우등)에도 포함된다.

3-1.3. 정책 기대효과

햄버거를 가공식품으로 분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1) 햄버거 포장지에 원재료 및 함량,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수 있다.
- (2) 햄버거의 원재료 및 함량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즉석식품 원재료 및 함량 공개 등의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2. 어디티브 시그널(Additive Signal) 제도 도입

3-2.1. 정의

식품첨가물(food additive)을 특징별로 분류하여 기호(단위: 군)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3-2.2. 목적

현재 많은 식품첨가물들은 각각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착색료, 보존료와 같은 이름이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 이름만 보고 신체에 어떤 용도로 작용하는지 모르고 먹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어디티브 시그널 제도의 도입은 특징별로 나누어진 식품첨가물에 시그널(군)을 표시하고 그 군에 해당하는 첨가물이 어떤 것인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섭취하게 함을 목적으로 취한다.

3-2.3. 실행계획

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13가지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식품첨가물표를 바 탕으로 착색료, 보존료와 같이 분류된 식품 첨가물을 1군, 2군 등 군으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각 각의 특징과 용도에 맞게 분류한 시그널은 군마다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시그널과 의 충돌이 없게 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군 안에 모순된 첨가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그널을 식품 원재료표에 표기 시 분류된 특정 식품첨가물 옆에 시그널을 표시하여 어느 군에 속하는지 구분시킨다. 예를 들어 ①군이 보존료로 분리되고 소르빈산 칼슘이 보존료에 해당한다면 '소르 빈산칼슘(1)' 이라 표기한다. 또한 다수의 사람에게 극심한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부작용 등이 예 상되는 첨가물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다소 복잡한 형태의 식품첨가물 표 를 가소화하여 군별 시그널표를 작성해보았다.

〈각 군별 시그널표〉

| 군 번호 | 명칭 | 식품첨가물 | 기능 | 사용제품 | 부작용 | |
|---------|--------------------|---|--|---|---|--|
| 1 | 방부제 | 데하이드로초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부틸, 프로피온산나트륨, 프 로피온산, 벤존산나트륨 등 | 세균류의 성장을 억제하거 나 방지하여 식품이 잘 썩 지 않도록 함 | 치즈, 초콜릿, 청량 음료, 유산균음료, 고추장, 버터, 치즈, 마가린, 빵, 단무지, 된장 | 중추신경마비, 출혈 성 위염, 간에 악영향, 발암성 | |
| 2 | 감미료 | 돌신, 아스파테임, 사이클러 메이트, 사카린나트륨 | 단맛을 내며 설탕의 수백 배의 효과를 내는 물질 | 청량음료, 유산균음 료, 발효유, 어패류, 가공품, 간장, 된장, 잼, 과자, 빙과류 | 소화기 및 콩팥 장애, 발암성 | |
| 3 | 산화 방지제 |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몰식 자산프로필, 에리소르빈산, 아스코르빈산칼슘, 갈산프로필 등 | 지방질이나 비타민 A, D 등을 함유한 식품의 산패 를 방지 | 어패류 건제품, 어 패류 냉동품, 유 지, 버터 | 암 유발 | |
| 4 | 화학 조미료 (MSG) | 글루타미산 나트륨 | 식품에 존재하지 않던 맛을 내거나 존재하던 맛을 강하게 바꾸고 없애는 물질 | 과자, 통조림, 음료수, 카레 | 빈속에 3~5회 이상 섭취 하면 작열감, 얼굴경련, 가슴압박, 불쾌감 지속 | |
| (5) | 착색제 (타르색소) | 적색2호, 적색3호, 황색4호 등 | 소비욕구 충족을 위해 색 을 내게하는 화학물질 | 치즈, 버터, 과자 류, 캔디, 아이스크 림, 푸딩 | 소화효소 작용 저지, 장기장해, 발암성 물 질 유발 | |
| 6 | 발색제 | 아질산나트륨, 아초산나트륨, 니코틴산아마이드, 아스코 르빈산 | 색을 선명하게 하는 데 사 용하는 물질 | 햄, 소시지, 어류 제품 | 헤모글로빈 빈혈증, 호 흡기능 약화, 급성구토, 의식불명, 간장암 유발 | |
| 7 | 팽창제 | 베이킹파우더, 이스트파우더 | 빵이나 과자를 부풀리게 하는 화학물질 | 빵, 케이크, 비스킷, 초콜릿 | 메트헤모글로빈빈혈 증, 구토, 산독증, 비타 민 파괴 | |

| 군 번호 | 명칭 | 식품첨가물 | 기능 | 사용제품 | 부작용 |
|---------|-----------|---|---|--|---|
| 8 | 살균제 | 표백분, 치아염소산나트륨, 이염화이소이아뉼산나트륨 | 어육제품을 살균하는데 사용하는 화학물질 | 두부, 어육제품, 햄, 소시지 | 피부염, 고환위축, 발암 |
| 9 | 산미료 | 구연산, DL-사과산, 이산화탄소 | 탄산가스나 유기산이 들 어 있어 마실 때 청량감 을 주는 물질 | 청량음료, 과일통조 림, 젤리, 맥주 | 비만, 식욕감퇴유발, 충치, 위궤양, 위산과다, 설사, 두드러기, 두통 |
| 10 | 소포제 | 규소수지, 미리스트산, 올레인산 | 거품을 소멸 또는 억제시 켜 용기가 커질 필요가 없도록 하는 물질 | 간장, 청주, 맥주, 젤리, 물엿, 두부 | 소화기 및 콩팥 장애, 발암성 |
| 11) | 유화제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비탄지방상에테르, 스테아로일유산칼륨 | 서로 혼합되지 않은 두 종의 액체를 혼합시키는 제3의 물질 | 마가린, 쇼트닝, 케 이크, 캐러멜, 껌, 버터, 쿠키 | 피부장애, 내장세포파괴, 간 손상 |
| © | 강화제 | 분말비타민A, 유성비타민A, 염산염, 엽산, L-발린, L-라이신염산염 | 식품에 영양소를 강화 할 목적으로 손실된 영양 소를 보충하거나 영양가 를 높임 | 재빵용 밀가루, 코코아, 분유, 껌, 비스킷, 국수, 두부 | 빈속에 3~5회 이상 섭취 하면 10~20분 뒤 작열감, 얼굴경련, 가슴압박, 불쾌감 2시간 지속 |
| (3) | 품질 개량제 | 폴리인산나트륨, 폴리인산칼 슘, 제2인산나트륨, 제3인산 나트륨, 제3인산칼슘 | 포유동물의 육고기나 어 육을 가공할 때 씹을 때 의 식감을 향상, 식품의 탄력성과 보수성, 팽창성을 증대, 변질, 변색방지 | 수산물통조림, 빙과, 청량음료, 주스류, 햄, 소시지, 아이스 크림, 면류, 치즈 | 혈액 속의 칼슘을 침전, 칼슘, 철, 마그네슘 등의 손실, 미네랄흡수 방해 |

(1) 어디티브 시그널제도의 도입: 햄버거

매장에서 조리한다는 이유로 조리식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첨가물 표시법 대상에서 제외된 햄버거에는 기본적으로 30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들어간다. 공공정책 1에서 본 것 같이 햄버거가 가공식품으로 분류되고 나면 식품첨가물 표시법이 적용된다. 이를 근거로 어디티브 시그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햄버거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관련 회사는 모든 햄버거 포장지에 식품 원재료를 모두 표기한다. 식품첨가물을 표기할 때 함유된 모든 식품첨가물에 군으로 지정한 시그널 기호를 표시하고, 표 밑에 지침문과 같이 위험성(알레르기 유발, 부작용)이 있는 재료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또한 각 시그널의 의미를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테이크아웃(take-out)하는 경우 봉지에 위의 시그널 분류표를 의무적으로 붙이고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경우엔 매장 벽면에 시그널 분류표를 붙여놓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한다.

(2) 어디티브 시그널제도를 이용한 문제 해결

대안정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복합원재료가 도입되면서 식품 완전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 예를 들어 라면제품에 밀가루, 설탕, 마늘, 양파 그리고 복합원재료인 '간장'이 사용되었을 경우 간장의 함량이 원재료 전체 중 중량비율로 5% 미만일 경우 원재료명은 "밀가루, 설탕, 간장, 마늘, 양파"라고 표시한다. 이 때문에 복합원재료에서 미량으로 들어간 식품첨가물은 표시에서 제외되어 소비자들은 어떤 식품첨가물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복합원재료에 속한 모든 원재료를 용기에 모두 표시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디티브 시그널 제도를 도입한다.

도입 방법은 간단하다. 복합원재료명을 이전처럼 표기하는 대신, 함유된 식품첨가물 시그널 (군 번호)과 함께 퍼센트(%)를 기입하여 각 군의 첨가물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기입하면 된다. 극심한 알레르기 유발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첨가물은 빨간색으로 첨가물명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하고 먹을 수 있게 한다.

식품첨가물 표시 안내문에 공지할 때 같은 군의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종류, 기능, 사용식품, 부작용만 게시한다. 이 분류표를 활용하고 보완한 예시는 공공정책 2.3.1.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물론 표에 나와 있는 첨가물 외에도 세분화된 특징으로 분류된 식품첨가물들은 많다. 하지만 위의 13가지 첨가물 이외의 첨가물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시그널로 분류하는 것 외에 부연설 명으로 표기한다.

3-2.4. 효과

현재 복합원재료 안에 있는 첨가물은 표기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간단한 숫자를 표시함으로써 복합원재료에 들어 있는 첨가물까지 알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식품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첨가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 4. 실행계획

햄버거의 안전성 문제를 파악한 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팀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적용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6월부터 시작하여 교내에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은 물론 서명 운동이 실시되었고,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정부 기관에 본 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대안 정책, 공공 정책을 위해 세운 실행계획 및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 추후 진행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행 계획 및 일정〉

| 단계 | 1단계 (6.24) | 2단계 (7.2~) | 3단계 (7.10) | 4단계 (8.11) | 5단계 (8.11) | 6단계 (10월 중) | 7단계 (10.1~7) | 8단계 (10.4) | 9단계 (10.8) | 10단계 (10.11) |
|----|--|-----------------------------|----------------------------------|-----------------------------|------------------------------|----------------------|--------------------------|-------------------------------|--------------------------------------|---|
| 내용 | 식약청에 전화 문의 | 교내 캠페인 | 학생 대상 서명운동 | 정부 기관에 민원신청 | 식약청 안내 책자 건의 | 보건소에 문의 | 교내 캠페인 진행 | 강동 보건 소 식품 위생부와 인터뷰 | 농협중앙 회식품 업 무 담당자 와 인터뷰 | 시민 단체 '환경정의' 와의 메일 및 전화 |
| 목적 | 햄버거의 식품표시 제 범위 포 함 여부 알 기 위함 | 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여 | 정책 도입 에 대한 압 박을 가하 기 위함 | 햄버거의 식품표시 제 도입을 추진 | 시민들에 게 식품첨 가물 정보 제공 | 정책을 현 실성 있게 수정 | 정책 홍보 및 동의 구 하기 위함 | 정책 도 입 관련 조 언 구하기 위함 | 전문가의 조언을 듣 고 정책 의 완성도 높임 | 정책에 대 한 조언 및 도입 관련 기사 활동 진행 |

4-1. 식약청에 전화 문의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하지 않는 햄버거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식약청에 문의를 하였고, 다음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 (1) 햄버거에 들어간 각종 식품첨가물에 대한 내용이 포장지 어디에도 나타나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식품첨가물에 관련된 법을 찾아본 결과 '가공식품'에 한하여 식품첨가물 표시제가 현재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공식품에 대한 햄버거 포함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햄버거는 그 영업자에 따라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지 않는 탓에 식품첨가물표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4-2. 교내 캠페인

햄버거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심각성을 밝히고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식품첨가물표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갖고자 교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13년 7월 2일부터 시작하여 방학 전, 개학 후의 약 1달 기간 동안 점심 시간 식당 출입구를 이용해 식품 완전 표시제 및 햄버거 첨가물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게시하였으며 각 학급에 유인물을 배부하였다.

동, 서 출입구는 1~3학년 학생들이 모두 이용하는 장소로 교내 캠페인을 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로 생각되었으며 생활안전지도부의 허락을 받아 진행되었다. 또한 개학 후 축제 기간을 이용해 동아리 주 활동으로 홍보하였다.



그림 10. 교내 캠페인

그림 11. 캠페인 자료

4-3. 학생 대상 서명운동

국민적 서명운동에 앞서 햄버거의 주소비자 계층인 학생들의 참여 의식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햄버거의 식품 분류 미비로 인해 식품첨가물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황을 밝히고, 햄버거의 식품첨가물표시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렸다.
 - (2)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 후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 | | | | 8 | | | | | The state of the s | | | | |
|---|----------|---------|-----|------|------------------|-------------|-----|-----------------|--|--------|----------------|-----|--------|
| 햄버거 식품첨가 | 를 표시 사 | 명운동 | | i: | 성명 | 세종 및 세열 | 나이 | 시영 | 4 | 선명 | 작품-보기인 | 나이 | 서명 |
| 상임여자교통학교 가유누리 | | | | | 막고 | Tips | 10 | 500 | 81 | 943,5 | 344. | (1) | 85,316 |
| 성용에서프랑리프 기본부터 | | | | 2 4 | WEM | 40% | (n | gen | 82 | fisher | 52.415 | 107 | 2400 |
| << 한 시험문장의 회장>> 병의 항상이와 이용문자에서 고객으로 있게 함께서도 중인하고 항상하게 있지 것을 함께서 가져도 있게 된다. 수에 이용보다면 되고 있었다면. 수에 이용보다면 되고 있었다면. 수에 이용보다면 보고 기계하였다면 해외하고 있었다. | | | | | 25-246 | - Joseph M. | 18 | 26800 | 83 | (80.9) | 5°Nb | 10 | 01918 |
| | | | | | 76926 | -24NB | 10 | 7/438 | 84 | | | 1.7 | 0.640 |
| 1955의 프로젝 방식도 연화 개인보는 사람들이 목적으로는 아무를 받는 보험이었습니다. 현지역시다. | | | 4 | 5 1 | There | 100 | ln. | 90002 | 1 | 반음선 | 24 | 1-1 | 1 |
| | | | 4 | 6 | 75/23 | tran | 14 | 70417 | 85 | 753/50 | ign. | | 10/2 |
| 64 48 11 11 | 101 | | 4 | 7 k | 16 C 50 | 40 | 18 | a | 86 | 78.404 | 3/41/5 | (8- | 37 |
| (時期のような) (24年) 内は対する(20年) | 16 | 7575-L | 4 | | 유체리 | 850 | 18 | an | 87 | 경험적 | - 11 | 10 | ann |
| 12477 Street 25/0 ₁₂ | 11 | an | 1 4 | | 9210 | 45.65 | 10 | 0178. | 88 | PAS . | | 16 | 1 /04 |
| 5 MM Agrippin | 19 | | | 0 - | 22472 | the same | 17 | (M) | 89 | 子子子が | 8147 | 11 | SHOOL |
| | | 74(845) | | | 019.8 | 11.18 | 10 | ं व्यक् | 90 | | St Hi | 1/1 | |
| Cultural springs (1500) | 16 | | 5 | _ | | 44.5 | | Mar | 91 | 76026 | か た性 | 19 | 50 to |
| B005 15400 | 10 | | 111 | - 10 | 1501 | Anti | 18 | | 92 | Whole | religio) | 18 | |
| SHELL REGIONS | In /6 | THE THE | 115 | | Shotol | | - | Low | 93 | 245 | 44 | (6 | The |
| 11908 " 11970 146 96 97 8- | 19 | | 3 | _ | 易計包 | 8518 | /1 | 36-5 | 94 | 건네된 | चेंद्र-४५ | 18 | |
| ORU 4 | | | 1 5 | | 8/4% 00678 | | | | 95 | [HERN | | 16 | MS.Ph. |
| 학원 // 기838 : // | | | 111 | - | | // | 19 | 1222 May 25, | 96 | | 3/20 | 34 | 7/23 |
| 現代計 指 Mg | | 1 min | 411 | | केरमध् जिल्हा | 264 | 18 | | 9.7 | d 2121 | 対象 | 47 | 선거한 |
| TOWN HAVE | 15 | | 1 1 | _ | 4 - 1 | | 16 | 73069 | 98 | अंगह | My Colle | 1.6 | 763.00 |
| open franc | 19 | 90t- | 111 | 0 | 1720 | 35.54 | 1.8 | B. | 99 | - अवस | et4 | (8 | Reary |
| 380 6400 | (1) | | - 6 | 0 9 | 44년 | 3648 | 11 | 14 | 100 | - | THE PERSON NO. | 111 | 242/2 |

그림 12. 서명 운동

4-4. 정부 기관에 민원 제기

햄버거 식품첨가물표시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었다.

- (1) 식약청 홈페이지에 햄버거의 식품첚가물표시제 도입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햄버거의 식품첨가물표시제 도입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4-5. 식약청에 식품첨가물 관련 안내 책자 제작 건의

햄버거 식품첨가물표시제의 도입과 현행 식품첨가물 완전표시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안내 책자 제작을 건의하였다. 식품첨가물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시민들 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완전하지 않은 표시제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할 것을 식약청 홈페이지 국민광장의 '국민제안'을 이용하여 요구하였다.





그림 13. 식약청 민원

그림 14. 안내 책자 제작 요구

4-6. 강동구 보건소 문의 계획

햄버거 식품첨가물표시제 도입에 대한 실현가능성 여부를 묻고 현실성 있게 수정하기 위해 관련 업무 공무원에 연락해 사전 약속 후 직접 만남으로써 정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묻고, 보 건소에서 얻은 조언을 바탕으로 정책을 현실성있게 수정하였다.





그림 15. 보건복지부 민원

4-7. 교내 캠페인 진행

정책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 주 소비층인 청소년들에게 정책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1) 특징별로 나누어진 식품첨가물에 시그널(군)을 표시하고 그 군에 해당하는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디티브 시그널 제도에 대한 내용이 설명된 판넬을 제작하여 정책을 홍보했다.
 - (2) 정책에 맞게 햄버거 봉지의 도안을 고안하여 제작했다.
 - (3) 햄버거 봉지의 도안, 정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 동의란이 포함된 홍보지를 제작하였다.
 - (4) 정책에 동의하는 학생들은 동의란에 스티커를 붙이게 했다.
- (5) 동의한 학생들 중에서는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포스트잇에 직접 작성하고, 정책 도입 동의에 대한 청소년으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4-8. 강동보건소 식품 위생부와 인터뷰

식품위생부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정책에 대한 현 실행 상황과 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고 그에 따른 조언을 얻었다.

4-9. 농협중앙회 식품 업무 담당자와 인터뷰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에 대해 보완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점을 보완하여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수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농협중앙회 식자재 품질 관리, 상품 개발, 구매, 관리 등의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현 정책에 대한 문제점, 제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 실현하기 위한 방법 제시 등에 대해 많은 조언을 얻었으며 검토 여부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4-10. 추후 진행 계획 내용

안티패스트푸드 운동을 진행중인 시민단체 '환경정의'와의 메일 및 전화를 통해 공공정책의 어디티브 시그널제도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을 조언받았다. 환경정의 자체 내에서의 소식지에 가온누리가 제5회 사회참여발표대회에 참가하여 '햄버거 가공식품 분류 및 식품첨가물 적용'의 주제에 대한 활동을 진행한 것을 기사로 발간할 예정이다.

▮ 5. 제언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지켜주기 위해 가공식품에 식품 표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햄버거 같은 경우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애매한 경계에 위치해 있어 식품 표시 제도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햄버거를 가공식품에 분류하고 어디티브 시그널(Additive Signal)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의 주 소비층은 10대, 즉 청소년인지라 우리의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서명운동, 교내캠페인을 진행했다. 더 나아가 현재 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식약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식품첨가물 관련 안내 책자 제작을 건의하고 국회에 청원을 계획한 상태이다. 이 정책이 통과되어 소비자들이 햄버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소비를 하길 바라고, 정부측에서는 이번 햄버거 식품첨가물에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라다.